

신 국제경제질서와 세계무역기구(WTO)의 향후 과제

박태호

서울대 국제지역원 부교수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공식 출범한 것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근대사에서 보기 드문 의미있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WTO는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우루파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를 이행하고 회원국들간의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등 많은 실적을 쌓아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WTO는 계속해서 회원국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우루파이 라운드 협상에서 끝내지 못한 일부 분야의 서비스협상을 마무리시켰다. 특히 1996년 12월 싱가폴에서 개최된 제1차 WTO 각료회담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또한 금년 5월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출범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담에서는 2000년에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상을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WTO 출범으로 다자간 무역체제가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루파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를 모든 회원국들이 차질없이 이행하고 무역정책 담당자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고 하겠다. 특히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WTO체제에 매우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 이슈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루어 나가느냐가 WTO에게는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I. 서 론

1986년에 시작하여 7년 여를 끌어 왔던 우루파이 라운드 협상이 끝나고 그 결과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WTO의 출범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근대사에서 보기 드문 의미있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WTO의 출범으로 다자간 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세계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신통상 의제들이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TO는 3년 반 전에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우루파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를 이행하고 회원국들간의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등 많은 실적을 쌓아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WTO는 계속해서 회원국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우루파이 라운드 협상에서 끝내지 못한 일부 분야의 서비스협상을 마무리시켰다. 특히 1996년 12월 싱가폴에서 개최된 제1차 WTO 각료회담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싱가폴에 모인 각료들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무역자유화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하고 국제투자, 경쟁정책, 노동기준 등 새롭게 떠오르는 통상문제들을 WTO체제 내에서 논의하자는 데에 합의하였다. 이는 WTO가 본 궤도에 진입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년 5월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출범 50주년을 기념하기 위

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담에서는 2000년에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WTO 출범으로 다자간 무역체제가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를 모든 회원국들이 차질없이 이행하고 무역정책 담당자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고 하겠다. 특히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WTO체제에 매우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이슈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루어 나가느냐가 WTO에게는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본 논문의 목적은 세가지다. 첫번째 목적은 WTO가 과거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와 다른 점들을 살펴보는 것이다.¹⁾ 두번째는 싱가폴 각료회의의 결과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WTO가 쌓아 온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다. 끝으로 본 논문은 WTO가 적면하고 있는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II. WTO의 특성

WTO는 하루 아침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1948년부터 존속해 온 GATT의 제8차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가 종료되면서 탄생하였다.²⁾ 사실상 WTO는 GATT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그러나 WTO는 GATT와 근본적으로 다른 몇 가지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다.

WTO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GATT가 종전에 다루지 않았던 의제들을 다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서비스 교역, 무역관련 투자조치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새롭게 다자간 무역체제의 영역내로 들어 온 것이다. 이는 이제 WTO 규범이 규율하게 될 국제 통상의 범위가 지난 40여년간 GATT 규범이 규율해 온 것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이, 1986년 9월 우루과이 라운드 출범을 위해 개최된 각료회의는 모든 협상결과를 하나의 패키지에 담아 모든 회원국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소위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원칙을 채택한 바 있다. 따라서 WTO는 기존 GATT 하에서의 협정은 물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도출된 모든 협정들을 총체적으로 관할하는 통합된 다자간 체제를 정립하게 된 것이다.³⁾ 이 때문에 다수의 개도국들은 WTO

1) 1995년부터 2년간 있었던 WTO의 자세한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WTO(1995, 1996a)를 참조. 또한 WTO의 여러 측면에 대한 심층적 서술은 Hoekman and Kostecki(1995)와 Schott(1996)을 참조. 본 논문은 위의 보고서와 저서들을 많이 참고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힌다.

2)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역사적 개관은 Hoekman and Kostecki(1995)에 잘 서술되어 있다.

3) WTO내 상품관련 규범은 GATT-1994로 표현된다. 즉 우루과이 라운드 결과를 수용한 GATT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의 출범으로 GATT체제하에서 보다 훨씬 더 많은 의무를 지게 되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WTO의 두번째 중요한 특징은 국제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GATT는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출범당시부터 “협약(treaty)”에 지나지 않았으며 명확히 규정하면 국제기구가 아니다.⁴⁾ 반면 WTO는 회원국을 둘 수 있는 정식 국제기구이며 기존의 국제통화기금(IMF)나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수준의 위상을 부여받았다.⁵⁾ 통상전문가들은 WTO의 출범으로 IMF와 세계은행 등 두 개의 기구로만 이루어졌던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체제가 뒤늦게 세계경제를 효과적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완전한 틀을 마련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즉 WTO가 국제경제질서를 관할하는 브레튼 우즈 체제의 세번째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것이다. WTO는 이제 통합된 분쟁해결절차 등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으며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일관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WTO는 또한 상품과 서비스 분야의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는 여러 이슈에 대해 다자간 차원의 논의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줄 것이다.

세번째로 WTO는 1988년 우루파이 라운드의 중간점검회의에서 합의한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련제도를 감시하게 된다. 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에 의하면 각 회원국들은 무역규모에 따라 정해진 일정 주기마다 자국의 무역정책과 관련 제도에 대해 검토를 받게 된다.⁶⁾ 무역정책검토는 특별이사회를 통해 실시되며 당해국가와 WTO사무국이 각각 작성한 별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타회원국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는 회원국들의 무역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를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TO가 GATT와 다른 네번째 특징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각료회담이 적어도 매 2년마다 한 차례 이상씩 정기적으로 개최된다는 사실이다. 과거 GATT체제하에서도 각료회담은 열렸으나 정기적으로 열리지는 않았다. WTO체제하에서 정기적인 각료회담을 개최키로 한 것은 통상장관들을 자주 모이게 함으로써 WTO의 운용 및 정책방향 설정에 정치적인 힘을 얻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또한 각 회원국의 국내 정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정기적인 WTO 각료회담은 무역협정의

우루파이 라운드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Schott(1994)를 참조.

4) 따라서 GATT에는 회원국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체약국(Contracting Party)”으로서 참여하였다.

5) GATT체제의 특징에 대해서는 Dam(1970)이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6) 무역규모가 전체 회원국 중 4위까지는 매 2년마다 검토를 받아야 하고 5위부터 20위까지의 국가들은 매 4년마다, 그 이하의 회원국들은 매 6년마다 검토를 받게 되어 있다. 한국은 두번째 그룹에 속해 있으며 지금까지 1992년과 1996년 두 차례 검토를 받은 바 있다.

차질없는 이행과 무역자유화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독려하는 효과도 수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WTO체제의 다섯번째 특성은 법적구속력이 강화된 분쟁해결제도를 정립했다는 것이다.⁷⁾ WTO는 여러 분야로 나뉘어졌던 분쟁해결절차를 하나의 체제로 통합시켰다. 따라서 과거 GATT체제하에서와 같이 사안마다 자국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분쟁해결절차를 찾아 다니는 소위 “절차 쇼핑(forum shopping)”이 WTO체제하에서는 필요없게 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로 인해 수정된 동 제도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신속하고 자동적으로 진행되며, 그 법적 구속력도 제고되었다. 강화된 WTO 분쟁해결절차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패널구성과 패널 최종 보고서의 채택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했다는 것이다. 즉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패널 최종 보고서의 채택이 거부될 수 있게 만든 것은 그 좋은 예라 하겠다.⁸⁾ 이는 “반대에 대한 만장일치(negative consensus)” 원칙이라고 불리며 이 때문에 현 WTO체제하에서는 패널의 최종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그러나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이를 금번에 신설된 상소기구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⁹⁾

WTO의 여섯번째 특성은 회원국수가 GATT를 능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8년 5월 말 현재 WTO 회원국은 132개국에 이르렀으며 또한 중국, 러시아, 대만, 우크라이나, 사우디 아라비아, 베트남 등 30개국 가량이 가입 절차를 밟고 있다. 132개 회원국들 중 80% 가량이 개도국이며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들이 모두 개도국 또는 체제전환국임을 감안할 때 WTO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WTO는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회원국 수, 무역협상의 추진력, 회원국간 분쟁해결능력 측면에서 GATT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WTO의 설립은 1944년에 개최되었던 브레튼 우즈회담의 비전을 완성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직면에서 강화된 WTO는 앞으로 다자간 무역규범과 원칙을 보다 철저히 적용시킴으로써 연간 5조 달러를 상회하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을 공정하게 관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II. WTO의 실적과 평가

1. 우루과이 라운드 결과의 이행

7) WTO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해서는 Hoekman and Kostecki(1995)가 잘 설명하고 있다.

8) GATT체제하에서는 패널구성이나 패널 최종 보고서의 채택이 한 체약국의 반대만 있어도 거부될 수 있었다. 따라서 GATT의 분쟁해결제도는 유명무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 패널과 상소기구는 회원국의 의무와 권한을 감소시키거나 증대시킬 수는 없으며 관련사항의 법적해석에만 관여할 수 있다.

WTO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둔 분야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우루파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우루파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여러 종류의 통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확대하고 관련 국내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이며, 셋째는 WTO 협정에 포함된 여러 과제들을 추진하는 것이다. 무역자유화의 확대와 관련 국내법과 제도를 고치는 데에는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들의 이행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고의무의 이행과 주요 WTO 협정의 이행사항만을 평가하기로 하였다.

(1) 통고의무의 이행

WTO 규율과 우루파이 라운드 협상 결과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기본적인 수단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통고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우루파이 라운드 협상 결과로 인해 각 회원국이 통고해야 할 사항은 상품무역과 관련해서 약 175개이고 서비스무역과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약 40개가 된다.¹⁰⁾ 1996년 10월에 발간된 통고의무와 절차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WTO 통고의무의 이행률은 사안에 따라 90%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20% 미만의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고의무의 이행률이 가장 저조한 분야는 보조금 및 상계관세관련 조치들로 1995년 6월 통고시한을 지킨 회원국은 한 나라도 없었으나 그 후 2년 동안 76개국이 보조금관련 통고를 완료하였다.¹¹⁾ 통고의무의 이행률이 저조한 것 이외에도 통고의무에 대한 해석이 국가마다 다르고 통고의무의 이행을 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경제력이 취약한 개도국들이 통고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한 18개 회원국이 모두 개도국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준다고 하겠다.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통고의무의 이행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호인정관련 조치와 새로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법, 규정, 행정지침의 통고에 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서비스 협정

우루파이 라운드 협상 결과에 포함된 「전문직서비스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전문직서비스 작업반이 설치되어 회계분야 상호자격인정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현재 회계분야의 국내규제에 관한 다자간 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자간 규범이 제정될 경우 규범의 적용범위와 규범의 법적 형태에 대해서는 개도국과 선

10) 자세한 통고의무에 대해서는 WTO(1995, 1996a, 1997)를 참조.

11) 1997년의 통고와 통고의무의 이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각각 WTO(1997)와 김도훈(1997) 참조.

전국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규범적용범위에 대해서는 회계서비스를 양허한 국가들에게만 적용하자는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선진국들은 양허에 관계없이 전회원국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회계분야에서의 진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전문직서비스 전반에 대한 협정결과 이행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서비스 관련 긴급수입제한조치, 정부조달 및 보조금 등에 대한 원칙은 추가협상을 통해 마련하기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1995년 3월 서비스교역일반협정(GATS) 관련 규범작업반이 설치되어 추가협상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서만 논의가 있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는 부진한 상태이다.

2000년 1월 이전에 개최되기로 한 차기 서비스협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각국의 서비스 분야 제도에 대한 정보교환, 차기협상 지침 마련, 국내규제관련 규범마련 등으로 나뉘어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차기협상 준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지적재산권 협정

지적재산권 협정의 제65조에 의하면 선진국들은 1996년 1월부터 협정을 이행해야 하며 개도국들은 2000년 1월부터 협정을 이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 문제가 국제무역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을 들어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조기 협정이행을 촉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홍콩, 싱가폴, 한국 등 소수의 선발 개도국들만이 지적재산권협정 이행을 1-2년 앞당길 의사를 표명하고 있을 뿐 다른 개도국들이 이러한 조기 협정이행에 합류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¹²⁾

(4) 섬유 협정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우루파이 라운드 섬유협정(다자간섬유협정(MFA)에 의한 쿼터를 철폐)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섬유 수출국의 관심품목보다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관심품목의 쿼터를 철폐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이 계속될 경우 모든 민감한 품목의 무역자유화가 협정이행 완료 시기인 2005년으로 지연될 수 있어 수입국내에서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¹³⁾ 또한 이를 선진 수입국들은 반덤핑 규제와 잠정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통해 섬유 및 의류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어 개도국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해 대해 선진국들은 지금까

12) 한국은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2000년 이후 별도 법령검토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1998년 중 관련법령을 WTO에 통보하고 1999년 상반기에 법령검토에 응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3) Schott(1994) 참조.

지 섬유협정을 성실히 이행해 오고 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WTO에 설치되어 있는 섬유협정감시기구(TMB)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2. 서비스 후속협상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제정된 GATS는 사상 처음으로 생긴 서비스 무역에 적용되는 다자간 규범과 원칙이다. 최근 세계경제에서 서비스의 생산과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GATS가 일괄타결 원칙에 의해 WTO 체제 안으로 포함된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몇몇 특정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자유화 협상이 종료되지 않는 등 우루과이 라운드 서비스 협상의 결과는 매우 부진하였다. 특히 금융, 통신, 해운, 인력이동 분야에서 회원국들의 시장접근 확대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종료 이후 별도의 시한을 정해 놓고 후속협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¹⁴⁾

금융서비스 협상은 1995년 6월 미국이 다른 협상 참여국들의 시장접근 약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은 외국의 신규 금융서비스 공급자나 금융상품에 대해 시장접근 약속이나 내국민대우를 보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유럽연합은 1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었던 협상을 촉진시켜 합의도출을 끌어내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1997년 11월 1일부터 60일간 다시 협상한다는 조건을 포함시켰다. 회원국들은 그 때 가서 시장접근 약속을 수정 또는 개선하며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도 표명하기로 합의하였다. 1996년 12월에 개최되었던 싱가폴 각료회담의 결과로 인해 금융서비스 협상은 1997년 4월에 재개되었으며 지난 12월에 일단락 되었다.¹⁵⁾ 그러나 협상결과의 내용은 별로 개선된 것이 없으며 2000년에 있을 차기 서비스 협상에서 보다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기본통신 서비스 협상도 금융서비스 협상과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즉 1996년 4월로 정해진 협상시한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미국은 다른 회원국들이 내놓은 자유화 수준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행히도 싱가폴 각료회담에서의 강력한 지지와 촉구에 힘입어 기본통신 협상은 지난 2월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해운협상은 1996년 6월로 정해진 시한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더러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종료 이후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분야와는 달리 협상그룹의 노력이

14) WTO(1995) 참조.

15) 금융서비스 협상이 난관을 거듭해 온 것은 특정 분야 하나만 놓고 시장접근 협상을 할 경우 회원국간 무역의 득실을 균형있게 교환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의 다자간 협상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부족하였으며 해운서비스 협상은 결국 2000년에 있게될 다음 번 서비스 협상때까지로 연기된 셈이다.¹⁶⁾

서비스관련 후속협상의 네번째 분야는 인력이동에 관한 것이었으며 다른 분야의 협상과는 달리 이 분야의 협상은 지연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경간 인력이동은 주로 두 가지 형태로 국한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전되었다. 하나는 외국인 회사에서 일하게될 모회사의 핵심 인력이동의 허용에 관한 것이다. 즉 핵심 관리자와 기술인력이 이 분야에 속한다. 둘째는 단기 방문을 통한 서비스 공급을 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이동의 허용 여부이다. 즉 변호사, 회계사, 설계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이 분야의 협상에는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인디아, 노르웨이, 스위스 등 6개 국가만이 수준 높은 양허를 제시함으로써 협상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인력이동에 관한 협상 결과는 일정한 자질만 갖추면 외국인 회사에 속하지 않고도 개인 차원에서 서비스 공급을 위해 단기간 해외에서 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¹⁷⁾ 따라서 다음 번 서비스 협상에서는 인력이동에 관한 자유화 확대가 더욱 더 폭넓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으며 개도국들은 비숙련 노동인력의 이동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무역분쟁의 해결

WTO의 무역분쟁해결제도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가 가져다주는 혜택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규범과 시장접근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금번에 새로 정립된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과거 GATT 체제하에서의 제도와는 달리 WTO의 동 제도는 자동적으로 진행될 뿐 아니라 단계별로 일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어 절차가 인위적으로 지연되는 단점을 보완하였다. 동 제도는 무역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효율성과 유효성을 대폭 증대시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WTO는 금번에 패널판정에 대한 이의를 심사하는 상소기구를 상설기구로 설치하였다. 동 상소기구는 1995년 11월에 구성되었으며 7인 위원이 4년 임기로 일하게 되어 있다.¹⁸⁾

16) 해운서비스 협상이 사실상 진전 없이 무기한 연기된 것은 선진국들, 특히 미국 해운업계의 강력한 로비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WTO의 공평성에 근본적인 상처를 입혔다. 금번 해운서비스 협상의 결렬은 힘있는 선진국은 자국에 유리하게 협상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공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도 협상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반면 힘없는 개도국들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 좋은 예라 하겠다.

17) 인력이동에 관한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WTO(1995)를 참조.

18) 금번에 구성된 상소기구 위원은 미국, 뉴질랜드, 독일, 우루과이, 이집트, 일본, 필리핀 등 7개국에서 각 1명씩 선임되었다.

WTO의 출범이후 1998년 5월말까지 약 3년 반 동안 123건의 분쟁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이러한 숫자는 과거 GATT체제의 경우와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⁹⁾ 이 중 대부분의 케이스가 협의를 통해 이미 해결되었으며 일부 미해결 케이스들이 패널의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선진국은 물론 많은 개도국들도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동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일본이 그 뒤를 차례로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수의 개도국들도 동 제도를 이용하였으며 다른 개도국의 무역조치 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의 무역조치를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⁰⁾ 이러한 현상은 개도국들이 경제규모가 큰 선진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신뢰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끝으로 상설 상소기구도 제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TO 분쟁해결제도의 공정성이 제고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분쟁이 제도권 밖에서 해결되거나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들 결과가 일종의 판례로 남게 되어 앞으로도 비슷한 케이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라 하겠다.

4. 싱가폴 각료회담 결과

WTO 출범이후 처음 있는 각료회담이 지난 12월 싱가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120여개 회원국 각료들은 22개 항목으로 구성된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각료선언문의 주요내용은 모든 회원국으로 하여금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경제개혁, 규제철폐, 무역장벽 완화 등을 단행하라는 것이다.²¹⁾ 싱가폴 각료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당시 출범한지 2년밖에 안된 WTO가 국내정치와 특정 이해집단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능력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싱가폴 각료회담 결과 중 가장 팔목할 만한 것은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의 체결이다. 세계 정보기술관련 상품무역의 93% 가량을 점유하

19) 123건 중 중복된 케이스를 제외한 독립된 사안은 총 86건이다. 이는 GATT가 존속한 지난 47년동안 약 300건의 분쟁이 제소된 것에 비추어 보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 총 123건 중 28건이 개도국이 선진국을 대상으로 제소한 것이었다. 미국의 가솔린관련 환경법(가솔린의 환경오염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함) 개정이 가솔린 수출국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주장을 받아들여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으로 하여금 불공정조치를 시정토록 하였다. 그 후 미국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받아들인 바 있다.

21) WTO(1996a, 1996b) 참조.

고 있는 약 35개 국가들은 2000년까지 동 제품에 부가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²²⁾ 본 합의는 컴퓨터, 통신기기, 반도체 상품, 소프트웨어 등 300여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5,000억달러 규모의 무역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상장관들은 노동기준, 경쟁정책, 국제투자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문제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서도 타협점을 찾았다. 매우 민감한 의제로 논의되어 왔던 무역과 노동기준에 대해서, 각료들은 기본적으로 노동기준을 다루어야 하는 기구는 WTO가 아닌 국제노동기구(ILO)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WTO는 핵심 노동기준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노동기준을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다.²³⁾ 통상장관들은 국제투자와 경쟁정책에 대해서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좀 더 연구하기로 하였으며 정부조달에 대해서도 실무작업반을 구성키로 하였다. 현재의 정부조달협정이 다자간 협정이 아닌 복수 국가간 협정이며 정부조달 사업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에 금번 실무작업반에서는 동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자간 규범의 필요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²⁴⁾

무역자유화와 관련해서 장관들은 우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세계무역자유화의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천명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첫째, 기본통신서비스 후속협상을 1997년 2월 15일까지 끝낸다는 데에 합의하였으며, 둘째, 금융서비스와 회계서비스 후속협상을 1997년 말 이전에 종료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²⁵⁾

또한 통상장관들은 다자간 체제가 우위에 있음을 재확인하였으며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규범과 원칙도 다자간 체제 내에서 짜여져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은 WTO체제와 보완적이어야 하며 WTO는 지역무역협정이 WTO의 규범과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금번 각료회담에서는 최빈개도국(least-developed countries)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장관들은 이들 국가를 돋기 위한 실행계획(Plan of Action)에 합의하였다. 이 계획에는 최빈개도국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들 국가의 수출이 보다 많은 선진국 시장으로 다변화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공식 회의를 개최한다는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방안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그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 Ruggiero(1997)를 참조.

23) WTO(1996b) 참조.

24) 정부조달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도 논의가 되어 있다.

25) 기본통신서비스와 금융서비스 후속협상은 싱가폴 각료회담이 정한 시한대로 각각 마무리 되었다.

끝으로 장관들은 1994년 마라케쉬 각료회담에서 결정된 후속의제("built-in agenda")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즉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차기협상 추진, 반덤핑, 관세평가 등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도출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장관들은 각 의제에 대한 일정만큼은 원래 협정에 정해진 대로 지켜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에 차기협상과 검토방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다.²⁶⁾

싱가폴 각료회담이 모든 면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차기 협상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해서는 회원국들간에 매우 큰 입장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농산물 차기협상의 준비시기에 대해서는 회담 마지막까지 입장대립이 지속되었다.²⁷⁾ 싱가폴 각료회담에서 실질적인 결과가 기대되었던 환경과 무역관련 의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²⁸⁾ 금번 각료회담에서는 최빈개도국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은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 싱가폴 각료회담은 성공적이었음에 틀림없다. 다자간 무역체제가 역점을 두어야 할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방안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잘 정립하였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경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WTO의 관할 영역을 넓힌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싱가폴 각료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남으로써 이제 WTO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책임져야 할 핵심 기구로 부상하였으며 IMF와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와 거의 비슷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

5. 제2차 각료회담

지난 5월 18-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GATT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제2차 WTO 각료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각료회의가 기념행사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 여러 의제를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각료회의는 두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첫번째 결과는 차기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한 준비작업 일정에 관한 것이고 두번째 결과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선언의 채택에 대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1997년 5월부터 각종 국제회의를 통해 2000년 초에 포괄적인 차기 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또는 Millenium Round)을 출범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제의해

26) WTO(1996b) 참조.

27)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하는 남미국가들과 같은 농산물 수출국가들은 금번 각료선언문에 차기 농산물 협상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결국 아르헨티나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후속의제(built-in agenda)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만이 각료선언에 포함되었다.

28) 동 이슈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더 연구하기로 함과 동시에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를 WTO내 상설위원회로 승격시켰다.

왔다. 이에 반해 미국과 일본은 포괄적인 다자간 협상보다는 농산물과 서비스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자유화 협상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취하여 선진국들 간에도 뉴라운드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왔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미국, 유럽연합, 카나다, 일본의 통상장관회의에서 농산물과 서비스는 물론 공산품 등 여타분야를 포함하는 공범위한 자유화협상(broad-based liberalization)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개도국들은 당초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의 이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들어 뉴라운드 개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금번 제2차 각료회담에서 개도국들은 차기협상이 개도국들의 이해를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전환함으로써 포괄적인 뉴라운드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2차 각료회담은 각료선언문을 통해 금년 9월부터 WTO 일반이사회에서 광범위한 추가무역자유화(further liberalization sufficiently broad-based)를 위한 준비작업 논의를 시작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통상장관들은 1999년 하반기 미국에서 개최되는 제3차 WTO 각료회담에서 차기협상의제, 협상방식 및 일정 등을 공식 결정키로 합의하였다.

금번 제2차 각료회담의 두번째 주요 결과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것이다. 미국은 1998년 2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채택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후 미국, 유럽연합, 카나다 및 일본은 일단 WTO에서 전자상거래의 무역관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금번 각료회의에서는 준비시간이 촉박했던 점 등으로 미국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못했으나 전자상거래관련 별도의 각료선언이 채택되었다. 동 선언에 따르면 1998년 9월 WTO 일반이사회 개최 이전까지 전자상거래의 무역관련 측면에 대한 포괄적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1999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제3차 각료회의에 작업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회원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협재의 무관세 관행을 지속키로 합의하되 무관세의 지속여부는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IV. 향후 과제

두 차례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서비스 후속협상의 타결, 정보기술협정의 합의 등이 연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WTO체제는 세계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국제경제기구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WTO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새로 떠오르는 무역관련 이슈들이 WTO체제 안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데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현재 가입절차를 밟고있는 국가들이 모두 회원국이 된다면 전체 회원국수는 160개국에 이르게 되어 명실공히 범세계적 기구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분쟁해결제도가 과거보다 훨씬 더 강화됨으로써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제고되었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하나의 지구촌경제로 통합되어 가고 있어 다자간 무역체제는 기회와 도전을 함께 맞이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무역체제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WTO체제가 부여하는 권리와 의무도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²⁹⁾

1. 단기 과제

앞에서도 보았듯이 통고의무의 이행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조금과 상계관세조치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나라가 자국의 보조금관련 통고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제출 시한 내에 한 나라도 통고를 하지 않았다. 200개가 넘는 사항에 대해 통고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행정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심지어는 몇몇 선진국들도 둘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적은 경제규모의 개도국들에게 200여개의 통고의무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의 국내조치관련 통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WTO도 통고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개도국에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섬유와 의류의 무역과 관련해서도 1995년 1월부터 근본적인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즉 2005년까지 십년에 걸쳐 선진국들에 의해 섬유와 의류 무역에 부과되었던 수량규제(Quota)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는 것이다. Quota 철폐는 세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첫번째 단계에는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품목을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품목을 마지막 단계로 미루는 경향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섬유 및 의류를 수출하는 많은 개도국들이 불공평함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WTO는 섬유감시기구(Textiles Monitoring Body)를 통해 섬유 및 의류 무역의 투명성 제고와 균형된 Quota 철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OECD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MAI) 협상이 종료되면 MAI내 서비스 분야와 WTO-GATS내 투자분야간에 직접적인 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즉 MAI가 최혜국대우(MFN)원칙을 수용한다면 이는 곧 MAI 회원국들이 MAI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게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혜택을 부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아마도 이러한 소위 “무임승차(free-ride)”를 없애기 위해 MAI 회원국들이 조건부 최혜국대우(conditional MFN)원칙을 채택하려 할지도 모른다. 싱가폴 각료회담에서 설치하기로 한 투자관련 실무작업반은 이러한 OECD와 WTO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³⁰⁾

WTO 가입여건이 GATT 가입여건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

29) Schott(1996)와 Hoekman and Kostecki(1995) 참조.

30) Bark(1996) 참조.

렵지 않다. 국경조치들 뿐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책과 제도들도 WTO 규범과 원칙에 부합시켜야 하는 등 GATT체제하에서보다 훨씬 다루어야 할 의제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30개 가량의 국가들이 WTO 가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 러시아, 대만 등 세계 주요 무역국과 베트남, 체제전환국 등 역동적으로 무역 성장을 꾀하고 있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국가가 WTO 규범과 원칙을 수용하는 한편 의미 있는 시장접근 약속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동시에 이들 국가가 WTO에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무국과 주요 회원국들의 협조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국가가 WTO에 가입될 때 WTO는 진정한 의미의 범세계적 기구가 될 것이다.³¹⁾ 또한 WTO는 가입절차와 관련하여 분야별 양허수준과 협상일정을 보다 투명하게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장기 과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무역자유화의 확대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모든 WTO 회원국들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종결 당시 합의한 여러 후속의제("built-in agenda")에 대한 협상을 포함하여 새로운 무역자유화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 그러나 WTO에서의 지속적인 무역자유화 확대에는 근본적인 어려움들이 내재하고 있다. 즉 과거에 수차례 개혁을 통해 자유화를 시도했으나 국내 기득권층이 강하게 저항하는 분야나 주요 협상국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과 유럽 국가 등 많은 선진국들이 아직도 섬유와 의류, 신발, 가전제품에 대해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선진국들은 이와 같은 고관세(peak tariff)를 획기적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들도 관세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무역자유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즉 개도국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간의 차이를 중장기적으로 대폭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³²⁾

WTO는 21세기에 대두될 통상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다자간 규범의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역과 환경과의 관계는 이미 WTO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싱가폴 각료회담에서는 투자와 경쟁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무역과 투자는 상품과 서비스를 국제시장에 공급하는 면에서나 국경을 초월한 생산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

31) 전문가들은 중국이 금년 말까지 GATT에 가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중국이 WTO 규범 및 원칙을 대폭 수용하고 무역자유화와 지적재산권보호 관련 양허수준을 대폭 높인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32) Schott(1996) 참조.

는 면에서 점점 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무역과 투자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득과 혜택은 수혜국내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기능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번 싱가폴 각료회담의 결정은 무역, 투자, 경쟁정책간에 이와 같은 상호의존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통상의제들을 WTO의 영역 안으로 수용함에 있어서는 모든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WTO가 과연 이러한 신통상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전문성과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도 검토되어야 하겠다.

회원국들은 WTO가 기본적으로 무역협상을 담당하는 기구이지 연구와 분석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통상의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는 OECD, ILO, UNCTAD, WIPO 등과 같은 다른 국제경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제경제기구와의 연계는 WTO의 분석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 기구와 신통상 이슈에 대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싱가폴 각료회담 결과 무역과 노동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WTO에서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싱가폴 각료회담에서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다른 어떤 무역체제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WTO는 지역차원의 무역자유화와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상호보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무조항을 WTO 규범 속에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규정은 매우 명확치 않을 뿐더러 불완전하기 때문에 남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WTO 회원국들은 지역무역협정이 다자간 무역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WTO 규정과 감시기능을 제고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폴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ITA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이루어진 무관세 협정의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역외국을 차별하는 지역무역협정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즉 개별 상품의 완전 자유화가 폭넓게 이루어지면 지역별 무역자유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WTO의 조직구성을 보면 최고 의사결정은 각료이사회에서 이루어지며 일상적인 업무운영은 회원국의 상주대표가 참석하는 이사회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회원국은 한 표의 투표권만을 행사하게 된다. 총 회원국의 수가 이미 132개국에 이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사결정제도는 상황에 따라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몇몇 전문가들은 WTO의 운영방식을 IMF나 세계은행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즉 주요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들을 선임하여 이사회(Board of Executive Directors)를 구성한다는 구상이다.³³⁾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경제 및 교역 규모가 적은 다수의 WTO 회원국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국가는 현재의 제도하에서도 많은 경우에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소수의 이사회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개별 국가에게 미치는 영향이 확실치 않아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개편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경제규모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힘이 큰 국가들이 WTO의 회원국이 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제도의 도입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WTO 회원국들은 WTO 체제 내에 아직도 협정에 가입한 소수의 국가만이 참여하는 복수국가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s)이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이다. 최근 정부조달시장의 규모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분야도 포함한 정부조달협정을 WTO 전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규범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분야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정부조달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WTO는 1995년 1월 출범이후에 관할 영역이 확대되고 조직이 정비되었으며 두 번의 각료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등 명실공히 정식 국제경제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신설된 WTO가 세계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에 과연 잘 대처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아직도 회의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WTO가 GATT체제하에서 보다 더 나은 성과를 기시적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싱가폴에 모인 통상장관들은 우루파이 라운드 협상에서 결정한 후속의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조치들을 거부하며, 회원국간의 분쟁은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들과 체제전환국들을 다자간 무역체제로 완전히 통합시키자는 데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내부지향적인 지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추세는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며 이는 새로 형성되는 국제경제질서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다자체제와 지역주의 및 보호무역주의는 병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세계무역환경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세계무역환경이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위상과 신뢰도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다.

즉 WTO가 역동적인 무역자유화를 주도해 나감으로써 다자간 무역기구로서 강하고

33) Hoekman and Kostecki(1995) 참조.

효과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면 지역주의의 추세는 약화될 것이다. 또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무역협정과 다자간 접근방법이 상호 보완적일 수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아가 다자간 무역체제가 모든 회원국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일 때 보호무역주의는 줄어들 것이다.

이제 출범한지 3년 반밖에 되지 않은 WTO의 실적과 앞으로의 성공여부를 이야기하기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미 여러 곳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회원국들이 무역분쟁의 해결을 위해 점점 더 WTO 분쟁해결기구를 찾고 있으며 아직 가입하지 못한 많은 나라들이 WTO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더욱이 싱가폴 각료회의는 신통상의 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함으로써 WTO의 관할영역을 확대하였으며 지속적인 무역자유화 추진의 계기도 마련해 주었다. 또한 제2차 각료회의는 2000년에 포괄적인 다자간 무역협상을 출범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성패는 개방된 세계경제를 유지하려는 회원국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특히 기존의 이해집단들에 의한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압력에 회원국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압력을 단호히 차단하고 WTO가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회원국이 합심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 도훈. 1997. 「WTO의 평가와 미래의 역할」. 미발간 자료. 산업연구원.
- Bark, Taeho. 1996. "Comments on Unfinished Business and New Challenges." in J. Schott. ed. *The World Trading System: Challenges Ahea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p. 254-257.
- Dam, Kenneth W. 1970. *The GATT: Law and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ekman, Bernard and Michael Kostecki. 1995.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orld Trading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 Ruggiero, Renato. 1997. "The Future Path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 Address to Korean Business Association.
- Schott, Jeffrey J. 1996. *WTO 2000: Setting the Course for World Trad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_____. 1994. *Uruguay Round: An Assessmen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WTO. 1997. *Annual Report 1997*. Volume 1.
- _____. 1996a. *Annual Report 1996*. Volume 1.
- _____. 1996b. Draft Singapore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 (96)/DEC/W.
- _____. 1995. *Overview of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Trading System*. WT/TPR/OV/1.

NEW WORLD ECONOMIC ORDER AND WTO'S FUTURE CHALLENGES

Taeho Bark

*Graduat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result of the seven-year-long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entered into force on 1 January 1995.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was a significant event in the modern history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ith the creation of the WTO, it is hoped that it can reverse the erosion of the world trading environment and effectively deal with rapid changes in the global economy.

Since its inception three years ago, the WTO has made substantial progress in implementing and administering trade agreements and in settling disputes among member countries. At the same time, the WTO continues to expand its membership and to pursue negotiations on specific service sectors extended from the Uruguay Round. Furthermore,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two Ministerial Conferences has provided a well-defined road map for continuing liberalization of trade and a broadening work program to keep the WTO up to date with a fast-changing world economy.

With a wider scope and strengthened institutional setup, the WTO system is performing well. However, there still persists some skepticism regarding the ability of the WTO to address the challenges facing the world economy. At the same time inward-looking regionalism and protectionist movements will continue to progress in some way, undermining the stability of the new world economic order. This is an inevitable fact of the world trading environment. But the nature of these challenges can be greatly influenced by the status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s long as member countries maintain a strong and effectiv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ith the

dynamic momentum of trade liberalization, proliferating regionalism will be countered.

It is a little bit too early to judge for sure how successful the new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ill perform. But there are already some positive signs. Member countries are turning increasingly to the WTO to resolve trade disputes and a long list of countries are actively seeking membership in the WTO. More importantly, the two Ministerial Conferences broadened the trade agenda and gave strong impetus to further liberalization. The future success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lies in all member countries' strong commitment to maintain an open trade regime and to firmly resist any domestic pressures aimed at going back to old practices of protectionism.

